2026년도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1차 추경 예산 총칙

(2026.01.01. ~ 2026.12.31)

제1조(총칙)

①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6년도 1차 추경 예산서를 편성 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및 관할 시·구청에 보고한다.

②재원에 따라 보호작업장 예산서를 작성한다.

③ Happy햇비 장애인보호작업장 2026년도 1차 추경 예산 총액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세입				세출			
구분	2026년도 본 예산(A)	2026년도 1차 추경 예산(B)	증,▲감 (B-A)	구분	2026년도 본 예산(A)	2026년도 1차 추경 예산(B)	증,▲감 (B-A)
총액	**817,528**	**900,441**	**82,913**	**총액**	**817,528**	**900,441**	**82,913**
사업수입	216,000	204,000	▲12,000	사무비	523,240	544,558	21,318
보조금수입	468,788	481,295	12,507	재산조성비	17,020	45,483	28,463
후원금수입	720	720	-	사업비	276,268	299,042	22,774
전입금수입	106,000	106,000	-	잡지출	500	500	-
전년도이월금	-	82,406	82,406	예비비	500	10,858	10,358
잡수입	26,020	26,020	-				

④ 2026년도 본 예산서 전체 총액은 817,528천원, 2026년도 1차 추경 예산서 전체 총액은 900,441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82,913천원(약10.1%)증가하였다.

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,

(1) 사업수입 204,000천원, 보조금수입 481,295천원, 후원금수입 720천원, 전입금 수입 106,000천원, 전년도 이월금 82,406천원, 잡수입 26,020천원이다.

(2) 세입 주요 증감 원인은

가) 사업수입 12,000천원(5.6%)감소

- 차기 이월금 확정에 따른 사업수입 조정으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분 반영

나) 보조금 수입 12,507천원(2.7%)증가

- 종사자 호봉 승급 및 기본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
- 경기도재활프로그램 확정으로 인한 증가분 반영

다) 전년도 이월금 82,406천원 증가 : 차기 이월금 확정으로 인한 이월금 증가분 반영

⑥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

1) 사무비 544,558천원, 재산조성비 45,483천원, 사업비 299,042천원, 잡지출 500천원, 예비비 10,858천원이다.
2) 세출 주요 증감 원인은
가) 사무비 21,318천원(4.1%)증가
-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(기본급/제수당/퇴직적립금/사회보험) 증가분 반영
- 보유차량 증가(기존2대→4대)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차량비 증가분 반영
- 배양동 →재배동 변경에 따른 전기 사용율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상승분 반영

나) 재산조성비 28,463천원(167.2%)증가
- 기존 4 재배사 판넬 공사 예정으로 인한 시설비 증가분 반영
- 건표고 생산 증가로 인한 건조기 추가 구매 예정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분 반영

다) 사업비 22,774천원(8.2%)증가
- 근로장애인 급여 및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상승분, 사회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보호작업 사업비 증가분 반영
- 건표고 선물세트 판매 증가로 인한 선물세트 추가 제작으로 인한 생산 사업비 증가분 반영
- 경기도재활프로그램 확정에 따른 직업재활 사업비 증가분 반영

라) 잡지출 변동없음

마) 예비비 10,858천원(2071.6%)증가
- 2025년도 보조금 반납 금액 확정으로 인한 증가분 반영

제2조(내역) 세입•세출의 세부명세는 2026년도 1차 추경 예산서와 같다.

제3조(집행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보조금등의 사용목적에 부합될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 제16조(예산의전용) 항목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조(기타) 본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•회계규칙”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